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가단○○○○○○[본안] 2017머○○○○○[조정]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 고	●●● 외 2명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4명
판결선고일	2018. 03. 08. 강제조정	비 고	
사건개요	원고 ●●●는 피고 ◇◇◇과 같은 반은 아니었으나 2014년(1학년) 수학과목 이동수업으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, 피고 ◇◇◇은 이때부터 수학 이동수업시간마다 원고 ●●●를 모욕하기 시작하였고, 2학년부터 같은 반이 되면서 쉬는 시간마다 폭언과 폭행을 계속 하였음. 2015년 8월 원고 ●●●의 신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 ◇◇◇은 언어 및 신체 폭력을 인정하고 사회봉사5일 등의 처분을 받았음. 현재 원고 ●●●는 피고 ◇◇◇의 지속적인 폭언, 폭행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어, □□□대학교 □□□□병원에서 '외상후 스트레스 장애', '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'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음.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·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, 담임교사 피고 ★★★은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보호·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,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피고 ★★★의 보호·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80,692,700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 함.		
주 문	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2. 피고가 2016.05.03.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, 접촉·협박·보복행위금지처분,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1.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. 원고 ●●●에게 금60,692,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, 나. 원고 ◎◎◎, ◉◉◉에게 각 금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,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		
판결이유	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(강제조정결정)		
결 론	1.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★★★,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, 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. 2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		